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김 학 신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5
<b>제2장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실태</b> ....	8
제1절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과 유사 개념 구별 .....	8
1.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	8
2. 진술조력인 .....	12
3. 신뢰관계인의 동석 .....	17
4. 진술전문가 .....	19
5. 증인지원관 .....	20
6. 보조인 및 국선 보조인 .....	21
제2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필요성과 한계 .....	23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 .....	23
2.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필요성 .....	25
3.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한계 .....	28
가.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정상 한계 .....	28

나.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과정에서의 한계	30
다. 피해자 지원에서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부족	30

**제3절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실태 현황** ..... 32

1. 성폭력 범죄 실태 현황	32
가.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32
나.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	34
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	35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 현황	36
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현황	36
나.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	39
다. 수사 단계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정 현황	41
라. 경찰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현황	43

**제3장 경찰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45

제1절 경찰 수사 단계상 문제	46
1. 경찰 조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불참	46
2.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자질 검증 및 부정처사	47
3.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반복 진술	49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상 문제	50

제2절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제도적 문제 .....	51
1. 경찰 실무상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의 복잡성 .....	51
2. 수사 단계에서의 다른 지원자들과 일정 불일치 .....	52
3. 경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	54
4.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 문제 .....	55

## **제4장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58

제1절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 .....	58
1. 야간·휴일 등 국선변호사 조력 시스템 마련 필요 .....	58
2. 장애인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특화 필요 .....	60
3.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최초 진술부터 참여 .....	63
4.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택권 제공 .....	64

제2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66
1. 경찰과 검찰의 협력 구축을 통한 반복진술의 최소화 .....	66
2.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의 남용 방지 .....	68
3. 강력범죄 피해자로의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 .....	70
4. 외국인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정 확대 .....	72
5. 국선변호인 제도의 홍보를 통한 피해자 보호 정착 .....	75
6.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아동성폭력 전문성 구축 .....	76

**제5장 결 론** ..... 80

**【참고 문헌】** ..... 79

## 표 목 차

〈표 1〉 피해자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 12

〈표 2〉 최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 ..... 34

〈표 3〉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 ..... 36

〈표 4〉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지원 현황 ..... 37

〈표 5〉 최근 1년간 원스톱지원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현황 ..... 38

〈표 6〉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별 조력인 선정 현황 ..... 40

〈표 7〉 수사 단계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정 현황 ..... 41

〈표 8〉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절차 ..... 42

〈표 9〉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현황(25개소) ..... 44

〈표 10〉 최근 10년간 외국인 체류 인원 현황 ..... 73

## 그 림 목 차

〈그림 1〉 피해자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지정 절차 ..... 24

〈그림 2〉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33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현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4대 사회악(惡)」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정부부처 모든 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피해 후유증이 남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12조 ④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 형사피고인의 경우는 국가가 법률에 의거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경우가 없어 형평성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많은 법조인, 시민단체,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2012년 3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2013. 6. 19부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현재에는 두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제도가 시행되었다.

즉, 위 법률 제18조의 5와 6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법무부는 2011년 7월 13일에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이는 세계 최초 민·형사 통합 국가지원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이라는 평가를 하였지만,<sup>1)</sup> 위 법률 개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동 법률은 2012년 12년 18일 개정과 2013년 6월 19일 동 법률 시행을 통해 60여년 만에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sup>2)</sup>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 확대 등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sup>3)</sup>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

1) 2009년 UNODC와 UNICEF가 공동 발행한 「Handbook for Professionals and Policymaker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에서 권장한 ‘support person’제도보다, 민·형사를 망라해 포괄적·종합적 대리권을 가지고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최초로 포괄적인 법제화를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 “세계 최초 민·형사 통합 국가지원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2011. 7. 13, 보도자료 참조.

2)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정조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엄정히 대처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그 동안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요구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나, ‘12. 7.경 통영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12. 8.경 나주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등 일련의 강력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언론과 국회에서 친고죄 폐지 필요성 적극 대두되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1556호, 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

3)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①형법에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②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 지원관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였을 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함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경우와 그들의 보호자들 대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자기주장과 방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 과정과 법원의 공판 절차에서 법적인 권리 고지, 설명, 안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2년 3월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이후 2년여가 지났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폭행 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장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조사<sup>4)</sup>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고통을 없애고, 성폭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첨법상 강간죄로 처벌). 또한 ③‘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되며, ④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⑤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⑥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되었다. ⑦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다. ⑧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⑨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였다. ⑩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2013. 6. 19.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참조.

- 4) 예를 들어,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영상녹화기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술 받은 음성녹음소리가 작게 녹음이 되어 안들리는 등 영상녹화기기 조작 미숙으로 2시간 동안 그 어린 피해자는 4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력 범죄 발생 초기부터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과정 등 형사 절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최근 국가의 우선적 목표인 「4대 사회악」척결의 하나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운용이 되었는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참여와 운영에 관하여 원스톱지원센터의 담당자와 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심층 면접 조사를 하였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률적 조력 뿐 아니라 진술 조력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었는지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경우는 그 유형도 다양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 결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013. 6. 19.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기존 법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지원 대상도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그 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범죄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처럼 동등하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과 사회적 요구와도 부합한 조치였다.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sup>5)</sup>을 마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 관련법에서도 수사단계, 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sup>6)</sup>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sup>7)</sup>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고통속에서 지내야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인 조력조차 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와 그들의 인권을 위해 중요한 한 획을 그

5)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1일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개설하여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 법무부 인권국, 2014. 3, 65쪽.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정책에 대하여는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42~45쪽; 천정환,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정책의 문제점”, 교정복지연구 제23호, 2011, 38~43쪽 등 참조).

6) 강동욱,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관련 개정내용과 해설”, 경찰연구논집 제4호,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2009.2, 219쪽 이하; 박정성,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한양법학 제20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09.8, 87~104쪽;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참조.

7) 강동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 법무부 인권국, 2014. 3, 66쪽.

은 제도이다.

본 연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법률적인 조력은 경찰 수사 단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단계, 법원의 공판 단계에서도 법률적 조력은 필요하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인 출석권, 구속적 피의자 심문절차,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내 좌석, 출석, 기일지정 및 변경의 허가 신청, 의견진술권, 이의 제기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찰 수사 단계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법률적 조력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12년 3월 최초의 명칭인 ‘법률조력인’과 2013년부터 법률 개정으로 인한 만들어진 진술조력인, 이외에도 신뢰관계인, 진술전문가, 증인지원관, 국선보조인 및 보조인 등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된 유사한 용어들이 난무하여 실무자들에게는 혼란을 가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바, 법률조력인과 함께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살펴보고,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성폭력 범죄 실태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선정, 지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운용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경찰 수사 단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이에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경찰과 함께 전국의 25개 원스톱지원센터로 이동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물론 공판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과 보고서는 검찰청의 세미나, 판사들을 위한 법원의 세미나 등에서 많이 보고되었다.<sup>8)</sup>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 국선변호인들과 직접 상대를 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 면접 하였다. 물론 전국의 25개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면, 본 연구보고서가 더 완벽하였을 것이지만, 여러 여건상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더불어 각종 자료와 통계 등 문헌적인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하였고,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찰청 내부분건 자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국가기관 자료와 민간기관인 NGO 단체,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련 기관에서의 각종 통계 및 공개자료 등을 참고로 하였다.

8) 이선경·이정훈·손정혜, “성폭력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9. 9일자 심포지엄 발제문; 김삼화 외 8인,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법무부, 2013.

## 제2장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실태

### 제1절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과 유사 개념 구별

2012년 피해자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유사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 중첩적인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범죄 사건에 개입되는 지원자들 중 법률조력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진술전문가, 신뢰관계인, 증인지원관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지원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 1.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2011. 9. 15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및 국선변호인 지정등에 관한 제18조의 6(현재는 제30조) 규정을 신설하였다.<sup>9)</sup>

9) 당시 개정 법률 제18조의6은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로 ②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과 ③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 ④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법률조력인이라 하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로 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즉,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조력자로 선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의 조력을 위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국선변호인과 구별하기 위해 법률조력인 제도(2013. 6. 19부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 명칭이 변경 됨)라고 지칭하였다.<sup>10)</sup> 기존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한 제도인 반면, 법률조력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마련되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⑤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국내 법률조력인 제도와 외국의 피해아동 보호제도를 비교해보면, 우선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인으로서 허락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참가인의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공판기일 출석권,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및 설명을 들을 권리, 증인신문, 피고인질문, 의견진술권을 가진다. 또한 강간, 강제추행의 죄 등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가인정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에 청구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아동을 보조하는 보조자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아동을 돕는 법적 제도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원자(변호인 또는 전문가)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011, 60쪽.

었으며 피해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피해자로서 자기주장과 본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제도는 도입·시행이 되었다.

즉,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의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 확보와 2차 피해 예방의 결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효과도 도모하였다.<sup>11)</sup> 보통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법원의 재판 판결과 양형의 판단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여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sup>12)</sup> 인정받지 못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13)</sup> 따라서 피해자 국선변호

11) 백미순 외3,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93쪽.

12)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준거를 CBCA(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아동피해 자조사보고서,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 라고 한다. 즉 CBCA에는 5개 범주에서 논리적 일관성, 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세부내용의 풍부함, 맥락상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인용, 사건동안 예기치 않은 일 발생, 독특한 세부묘사, 부가적인 세부내용, 정확하지만 이해되지 못한 세부내용, 관련된 외적사실,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귀인, 자발적인 수정, 기억의 부족을 시인, 자기진술에 관한 의심제기, 자기비난, 가해자용서 등 19개의 준거가 있다. 박은정,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방안 토론문”, 법무부 인권정책과, 2011. 5. 4, 89쪽.

13)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녹화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에 짧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아무런 전과없이 건전한 가정생활과 성실한 교직생활을 해 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2007. 1. 19. 2006노335.

인을 통해 아동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등의 측면에서는 피해자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후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의 변호인 선임의 특례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으로 제27조에 규정되어 준용하고 있는데,<sup>14)</sup>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내용을 도입하였다. 이는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진술조력인은 2013년 12월 19일 부터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 【표 1】 피해자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보통 검사는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또한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법률조력인의 주된 업무로는 피해자의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이다.

## 2.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더불어 구별이 필요한 것이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준비기간을 거쳐 동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정되고 지원되는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

력자이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형사사법기관을 보조하고 있다.

이처럼 진술조력인 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진술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하는 전문적인 사람을 말한다.<sup>15)</sup>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심리·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중립적 위치에서 상호간 진술의 왜곡됨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다.<sup>16)</sup>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술조력인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아동·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의 진술녹화영상물, 녹취록, 피해자 면담자료, 보호자 면담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sup>17)</sup>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인 아동과 장애인들은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및 진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의 의사 표현력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5) 외국에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 증인, 피고인에게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홍종희, “아동성폭력 2차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재판, 언론보도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2013. 8. 29, 57쪽.

16) 이희경, “성폭력범죄 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이른바 4대악 관련 형사정책적 방향과 피해자학의 과제’, 한국피해자학회, 2013, 25쪽; 도중진·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8, 83쪽.

17) 2014년 4월 기준, 경찰청은 92명의 진술분석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25개의 윈스톱지원센터 등 아동·장애인 피해자 진술녹화시에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 내부자료, 2014. 4.

예를 들면 뇌성마비, 자폐성 장애,<sup>18)</sup> 다운증후군 등 정신지체 또는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sup>19)</sup>를 앓고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경찰의 조사에도 정확하고 명확한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결국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전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발달적, 언어적, 지적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 방향에 참고하도록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와의 언어적,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등 진술조력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sup>20)</sup>

성폭력 범죄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경찰의 초동 수사 때부터 진술을 제대로 받았다면 '동생 죽인 언니'라는 누명을 쓸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피해아동이 가해부모와 격리되지 못해 불안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는 아동전문가가 진술을 받았다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을 것이라고 아동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경찰 조사는 경찰관 2명에 의해 이뤄졌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있기는 했지만 언니의 심리 상태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 언니도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18) 자폐성 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9)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mental retardation: AAMR, 현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AAIDD)에서 정신지체로 명명했던 장애인들에게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지적장애가 더 잘 수용됨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는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라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참조.

20) 홍중희, 「앞의 글」, 57-58쪽.

"내가 동생을 발로 차 죽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아무 의심 없이 김양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했다. 김양은 조사 내내 가만 있지 못하고 회전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면서 진술하였는데, 이런 행동이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알아챌만한 전문가는 없었다.<sup>21)</sup> 이처럼 범죄전문가인 진술조력인의 필요성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을 10명정도 충원해 현재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학대 받은 아동에게도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아동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sup>22)</sup>처럼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4년 1월 기준으로 진술조력인 제1기는 48명만 확보된 상태로 지역별로 제대로 인력풀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예산도 부족하여 진술조력인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 한계로 지적되었다.<sup>23)</sup> 또한 2014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가 진행된 건수는 총 137건으로 전체 진술조력인 48명이 1인당 3건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137건 중 128건은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서 운영됐으며, 경찰은 3건, 법원은 1건, 검찰도 5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24)</sup>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진술조력인은 수사와 재판과정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수사과정의 참여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

21) 송옥진, "누명 쓴 언니 곁에 진술조력인 있었다면...경찰", 한국일보, 2014. 4. 13.

22)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3) 제1기 진술조력인단은 서울 13명, 경기 6명, 대구 5명, 경북 2명, 광주와 대전은 각 3명, 울산과 강원도는 각 1명 등이 확보되었지만, 충남과 제주도는 단 한명도 없다.

24) 양규원, "성폭력 피해 '진술조력인제' 수사재판 현장 정착 못해", 전자신문, 2014. 5. 28, 22쪽.

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보조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에 있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진술조력인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①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④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해

서는 아니 되는 제한을 두고 있다.

### 3.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피해자나 노인·아동학대사건의 노인이나 아동을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에 검사나 범죄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다.<sup>25)</su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법원이 특수 강도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법원·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sup>26)</sup>

이처럼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편안한 상태의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조사와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

2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法文社, 2011, 764쪽.

26)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자를 신뢰관계인이라 한다. 보통의 경우 부모,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친구, 상담소 활동가, 피해자 변호사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제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인정하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일반 범죄에도 확대하고 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만을 꾀하자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수사기관의 경우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규정도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하며,<sup>27)</sup>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공판절차나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

27) 신동운, 앞의 책, 807쪽.

축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형사소송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고인에 대한 특칙에 대해서만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를 위한 신뢰관계자의 동석에 대한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특칙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 4. 진술전문가

진술전문가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조사과정상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또는 진술분석 전문가라고도 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진술은 가해자 처벌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특히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의사, 변호사, 교수, 장애인 상담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보통 구성되어, 진술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자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전문가들은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계획 수립에 조언하고 피해자 조사과정에 배석해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다. 특히,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복된 조사

과정에서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중인 이수정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 수사단계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 판결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 처벌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이며, 특히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률·의료·심리·상담 등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5. 증인지원관

증인지원관 제도는 주로 법원의 공판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및 관련자가 증언을 하러 가는 경우 재판의 전(前)과 후(後)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운영한 법원의 경우, 증인지원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주차장까지 와서 마중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다시 주차장까지 배웅을 하는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만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29)</sup>

28)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 아동과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2012. 3. 27 보도자료 참조.

29) 이선경,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인권국, 2014.

증인지원관의 주된 업무는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외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초본 교부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은 물론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업무,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등을 담당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서는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지원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준비 부족으로 증인지원관 이용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재판부마다 달리 운영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30)</sup>

## 6. 보조인 및 국선 보조인

보조인은 피고인 또는 지위를 보조하는 자이나 변호인은 아니다.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자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조인이 된 자라는 점에서 변호인 제도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2014. 9. 29.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3, 18쪽.

30) 이선경, 앞의 논문, 19쪽.

특례법」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뿐만 아니라 보조인과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조인의 경우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 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년법」상 법원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물론 변호사도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친권자·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의(情誼)를 고려하여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되고자 하면 법원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호인과 달리 선임을 할 필요는 없다.<sup>31)</sup>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해아동 또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31) 吳世敬,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2010, 1216-1217쪽.

이상과 같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유사한 기관이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내용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우선 선결되어야 할 것 같아 그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실제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 실무에서도 혼란을 가중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 제2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필요성과 한계

###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의 충분한 획득 외에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과 사건정보의 입수, 형사절차에의 관여(고소, 처벌, 적절한 사회적 제재), 가해자로부터의 사죄(사죄광고, 사죄문, 화해에 따른 사죄) 등의 다방면에서 법률적 부조가 요구된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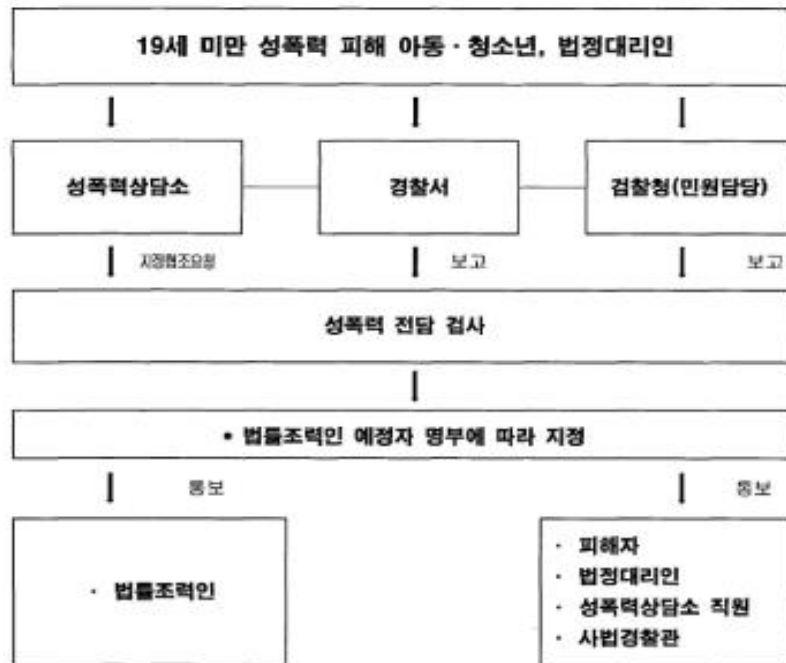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아동의 경우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기억하기 싫은 범죄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거나 범죄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심각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학대 피

32) 강동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 법무부 인권국, 2014. 3, 67쪽;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301쪽.

해아동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형사절차상 독자적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를 대리할 뿐 독자적인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33)</sup> 이러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실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그림 1】 피해자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지정 절차



33) 강동욱, 위의 논문, 66쪽.

2014년 3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에서 이선경의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2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특히,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고 답변한 비율이 100%에 달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80%의 응답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였으며 87.49%의 응답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대체로 피해자 변호사가 성실하고 친절하였으며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고 무엇보다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좋았다는 답변과 가해자와 접촉을 막아줘서 고맙다는 답변도 많았다.<sup>34)</sup>

현재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아직 그 범위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와 이 제도가 초기 단계로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본 제도의 도입의 시작 단계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 후술하기로 하겠다.

## 2.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의 당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34) 이선경,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2014. 3, 29-31쪽 참조.

고 범죄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피해자는 배제되고 가해자인 피의자·피고인에게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가해자의 권리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형사절차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 아동 및 장애인들은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 부족, 수사·공판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의견진술 및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었다.<sup>35)</sup>

이에 2012년 3월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어, 법률조력인 제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다.<sup>36)</sup>

또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내용을 도입하였다.

법률조력인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본 제도가 2012년 시행되고 1년 후, 2013년 법무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률조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면접 내용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35) 원혜옥,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에 대한 토론편”, 법무부, 2013. 3, 71쪽 참조.

36) 2012. 3. 16 - 2014. 2.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114명의 법률조력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최영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지정 토론”, 법무부, 2014. 3, 37쪽.

37) 김정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3. 15, 32-33쪽 참조.

법률조력인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 법률적 도움을 받으며, 형사절차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점, 상담기관으로서는 법률적 조력 업무를 법률조력인과 분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필요성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긍정적 차원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인의 도움 이전에 변호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형사절차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법률조력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낮설고 위압적인 형사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률조력인의 역할이 '상징적인 위약효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②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법률적 조력 또한 법률조력인제도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는 복잡한 소송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얻어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률조력인이 지정된 사건을 지원한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법적절차 및 소송관련 일반적 안내 이외에 이전에 상담소의 지위로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소년 사건이나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권 행사, 합의절차 등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③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과정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을 하게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는데,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공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못지않게 호소하는 문제가 수사, 공판으로부터의 소외감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지극히 주변적인 지위로 증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수사·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사의 지정 및 수사재판과정에서 조력인의 공식적인 역할수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과정에서 단지 증거로서의 심리의 대상이 아닌 보다 적극적 주체로서의 경험을 하게 한다.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험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법률조력인의 역할은 필요하다.

④ 법률적 지원의 역할 분담 기능이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상담기관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상당 부분 수행해왔던 바, 법률조력인이 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상담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 심리적 지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한계<sup>38)</sup>

법률조력인 제도가 성폭력 범죄에 있어 아동, 장애인 등 피해자의 특성을 알맞게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위와 같은 긍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이용자 측면에서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정상 한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자들이 경험하는 법률조력인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우선 법률조력인을 지정 신청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률조력인의 성별, 활동

38) 이하는 김정혜, 앞의 논문, 34-38쪽 참조하여 요약 인용하였다. 이 부분은 저자의 집단 면접을 통한 현실적인 국선변호사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인용하게 되었다.

하는 연계기관, 자원 활동 및 관련사건 지원 경험유무 등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아 명단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문의하거나 이름으로 성별을 유추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과 오랜 기간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사건지원을 해온 변호사들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이들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한 경우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률조력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피해자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를 법률조력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상담기관의 연계 변호사를 지정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방검찰청의 소속이 아니거나 규칙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정신청을 거부당한 사례들도 있다.<sup>39)</sup>

서울·경기 외의 지역, 중소도시 등의 경우 변호사 인력풀이 크지 않아 해당 지방 검찰청 혹은 해당 지역 소속의 변호사로 법률조력인 신청대상을 제한하면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법률조력인 지정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인 제도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다 해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경우,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조력인의 역할,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지 못한 경우, 경황없는 와중에 조력인의 지정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기 쉽지 않았던 경우등이 있다.<sup>40)</sup>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경우, 피해자가 가진 권리를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39) 김정혜, 앞의 논문, 34쪽.

40) 김정혜, 앞의 논문, 35쪽.

## 나.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과정에서의 한계

법률조력인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한계는 사건 지원에 임하는 이들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피해자와의 연락 두절 등 조력인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판기일을 알아보거나 의견서 작성 등의 책임을 상담기관에 전가하는 사례들도 있다.<sup>41)</sup>

법률조력인들의 지원태도가 소극적이고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법률조력인 간의 역할기대 차이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한데, 피해자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공방하는 변호사”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률조력인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원의 내용 및 그 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sup>42)</sup>

법률조력인의 소극적 지원태도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상 법률조력인의 권리와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거나 법집행기관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도 매우 협소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에서도 기인한다. 특히, 피해자의 정보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송기록 열람의 제한, 피해자 측 진술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측 증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노력한 법률조력인의 적극적 역할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 등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법률조력인과 연락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 법률조력인에게 고소 및 법적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해하기 어려워 상담원에게 찾아와 다시 설명을 부탁하는 경우 등도 법률조력인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sup>43)</sup>

41) 김정혜, 앞의 논문, 35쪽.

42) 김정혜, 앞의 논문, 36쪽.

43) 김정혜, 앞의 논문, 37쪽.

## 다. 피해자 지원에서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부족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아동, 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 유형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법률조력인으로서의 전문성 부족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 피해자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 조력인인 국선변호사가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이 가중된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후유증, 고충 및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이다.<sup>44)</sup>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함께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지적장애 피해에 대한 이해 없이 사건에 대해 화간이라고 단정하여 얘기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는 경우, 실제적인 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수사하듯이 피해자를 대한 경우, 화간을 언급하며 합의를 중용한 경우 등이다.

사법관행상의 2차 피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로부터의 회복을 돕기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은 매우 문제이다. 현재 법률조력인의 지원대상이 성인 피해자로 확대되었는데, 비장애 성인 피해자의 경우 아동, 장애인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 및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성폭력

44) 김정혜, 앞의 논문, 37쪽.

사건에 대한 전문적 이해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변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 더욱 가중된다.<sup>45)</sup>

이 밖에도 상담기관의 역할에 대한 법률조력인의 이해의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있어 협조가 잘 이루어지 않는 경우, 법률조력인의 역할을 믿고 상담기관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상담기관에서도, 법률조력인으로부터도 모두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등도 있다.<sup>46)</sup>

## 제3절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실태 현황

### 1. 성폭력 범죄 실태 현황

#### 가.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성폭력 범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현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에서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역할에 경찰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에 경찰은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성폭력 관리요원 528명을 증원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였다.<sup>47)</sup>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는 2013. 11 기준 26,44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2년 22,933건 대비 약 15.3% (3,515)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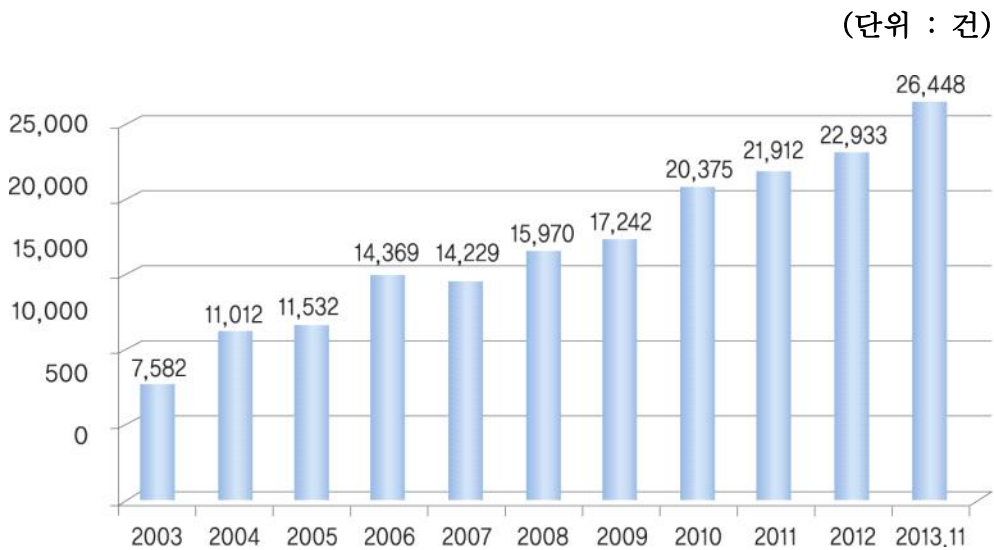
45) 김정혜, 앞의 논문, 38쪽.

46) 김정혜, 앞의 논문, 39쪽.

47) 김학신,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2014, 143쪽.

보통 강간범죄의 경우에 수치심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율이 3% 미만이라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강간범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성인 2,19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강간 피해 건수 추정치는 50,952건인 반면, 경찰 통계상 강간 발생 건수는 8,547건(16.7%)에 불과하여 강간 추정 암수율은 약 83.3%가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 병리현상의 증가로 인한 범죄취약 계층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혹한 형태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sup>48)</sup>

【그림 2】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sup>49)</sup>



※ 출처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144면.

48) 김학신, 위의 책, 143-144쪽 참조.

49)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2014. 1, 144쪽.

## 나.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도가니’ 사건 이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008년 1,220건에서 2012년 1,075건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 12월 일명 ‘나영이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부처의 종합적인 대책과 미비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면서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였다.

**【표 2】 최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sup>50)</sup>**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아동(13세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건)	1,220	1,017	1,179	1,154	1,075
	전체대비(%)	7.6%	5.8%	5.8%	4.8%	4.7%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건)	228	293	321	494	656
	전체대비(%)	1.4%	1.7%	1.6%	2.3%	2.8%

※ 출처: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100일」, 2013. 6.

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전국 1일 평균 2.9건(서울의 경우는 0.4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50)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100일, 2013. 6.

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비율은 2008년 전체 성폭력 범죄 15,970건 중 228건으로 1.4%를 차지하고, 2010년은 전체 20,375건 중 321건으로 1.6%, 2011년은 494건으로 2.3%, 2012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 22,935건 중 656건으로 2.8%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력 20개소 통계에 따르면, 상담소에 접수돼 지원한 피해자 중 비장애인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는 총 3천875명이며, 그 가운데 43%인 1,673명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이다. 이중 지적장애인은 1,227명으로 73%를 차지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성인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sup>51)</sup>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3년 한해 852건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sup>52)</sup>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

최근 5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08년 4,511건에서 2012년 7,725건으로 1.7배 정도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8년 824건에서 2012년 1,6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51) 이애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그라지지 않는 「도가니」”, 함께걸음, 2014. 6. 12 일자.

52)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증가와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 ‘도가니’를 기점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윈스톱지원센터 구축 등 국가의 지원과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발생은 전국적으로 1일 평균 21.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1일 평균 4.5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건)	4,511	5,191	6,185	6,844	7,725
[서울]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건)	824	1,004	1,375	1,477	1,654

※ 출처: 서울경찰청, 「치안은 과학이며 전략이다」, 2013, 자료 재구성.

##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 현황

### 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현황

2012. 3. 1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2012년 법률제정 당시 명칭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2년에는 월 평균 306명의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었고, 2013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전반기까지는 월 평균 373건으로 2012년에 비하여 월 평균 국선변호사 지정 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7-8월의 경우, 월 평균 1,008명의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 선정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 한 해 동안 8,08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 6. 19부터 모든 성폭

력 범죄 피해자로 법률조력인 선정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4】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지원 현황

기 간	성폭력 사건(건)	전체지정 인원(명)	지정비율 (%)	월평균지정 인원(명)
‘12.3.16~12.31	18,719	2,908	15.5%	306
‘13.1.1 ~6.30	10,638	2,239	21.0%	373
‘13.7.1 ~8.31	5,323	2,015	37.9%	1,008

※ 출처: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도자료, 2013. 9. 30.

2013. 6. 19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의 약 38%의 사건에서 법률조력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성폭력 피해자 5명 중 2명 정도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2. 3. 16 성폭력 범죄 피해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국한되어 있던 때에 비하여 선정 비율이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피해자 국선변호인 법률조력인의 선정 건수 등의 증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sup>53)</sup>

53)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곁에는 국선변호사가...”,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3. 9. 30, 참조.

【표 5】 최근 1년간 원스톱지원센터의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현황

구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근무인원	근무인원 1인당 지원 및 연계	총 조치중 NGO연계
총계		4,456	96.67	80.37	18.53
서울	경찰병원	190	5.00	73.73	17.52
	보라매병원	268	5.00		
	서울대병원	204	5.00		
부산	동아대병원	320	4.00	53.00	5.97
	부산의료원	38	4.00		
대구	대구의료원	412	5.00	126.25	
인천	인천의료원	283	4.00	173.63	13.95
	인천성모병원	382	4.00		
광주	조선대병원	401	4.17	161.15	19.14
대전	충남대병원	161	4.00	72.00	16.62
울산	울산병원	155	3.50	61.43	13.79
경기	아주대병원	201	4.00	967	24.21
	안산한도병원	36	4.00		
	의정부병원	174	4.00		
강원	강원대병원	47	3.00	41.67	26.61
	강릉동인병원	71	3.00		
충북	청주의료원	139	4.00	47.75	11.66
충남	단국대병원	75	4.00	67.50	28.51
전북	전북대병원	180	3.00	98.33	19.23

전 남	성가톨릭병원	180	4.00	71.38	17.65
	목포중앙병원	158	4.00		
경 북	안동의료원	60	3.00	59.50	29.69
	포항선린병원	85	3.00		
경 남	마산의료원	173	3.00	108.33	16.89
제 주	한라병원	63	3.00	42.67	6.34

※ 출처: 경찰청(내부자료), 원스톱지원센터 실적(12.11.1~13.10.31)

#### 나.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국선번호인 선정 현황

2013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3. 6. 19. 이후부터는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조력인인 피해자 국선번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3. 6. 19. 법률개정 이후 7월부터 2개월 동안에 피해자의 연령별에 따른 국선번호사 선정 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848명,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1,167명의 국선번호인이 선정되었다. 이를 해당 사건 대비 법률조력인인 국선번호사가 선정된 비율로 분석해 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국선번호인이 선정된 반면,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접수 사건 중 약 26.3%만이 법률조력인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별 조력인 선정 현황<sup>54)</sup>

기 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성인 성폭력 피해자	
	사건수	법률조력인 선정 인원	사건수	법률조력인 선정인원
‘13.7. ~ 13. 8.	840(건)	848(명)	4,483(건)	1,167(명)

※ 출처: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도자료, 2013. 9. 30.

19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 발생 사건 수에 비하여 법률조력인인 국선변호사의 선정 인원이 더 많은 이유는 1인의 가해자가 수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통계상 성폭력 죄명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청소년 상대 특수 강간의 경우 피해자는 청소년이나 죄명은 특수강간으로 되어 죄명으로 파악 된다면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이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가 경미한 내용의 사건이 많아 굳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은 상대적으로 강간이나 특수강간 등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고, 피해정도도 경미하여 현장에서 발각되어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sup>55)</sup>

54)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3. 9. 30. 보도자료 참조.

## 다. 수사 단계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정 현황

성폭력 범죄 사건에 있어 경찰, 검찰 등 수사 단계별 법률조력인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국선변호사는 2,908명으로 그 중 원스톱지원센터를 포함한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인원이 2,401명으로 그 비율이 82.6%에 이르고 있다.

【표 7】 수사 단계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정 현황

기 간	경찰신청 (원스톱지 원센터포함)	상담소 신 청	검사의 직접신청	합 계
‘12.3.16~ ‘12.12.	2,401(명) (82.6%)	233(명) (8%)	274(명) (9.4%)	2,908(명)
‘13.1. ~ 8.	3,980(명) (92.8%)	62(명) (1.4%)	248(명) (5.8%)	4,290(명)

※ 출처: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도자료, 2013.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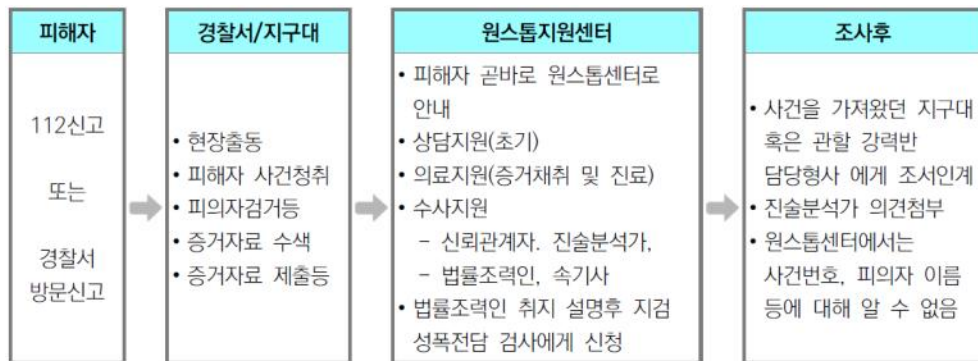
또한 상담소에서 신청한 인원은 233명으로 8%, 검사가 직접 신청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274명으로 9.4%으로 경찰의 신청으로 지정된 법률조력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3년 8월까지의 경우,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국선변호사 4,290명 중 3,980명이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됨으로써 그 비율이 92.8%에 이르고 있다. 즉, 대부분의 법률조력인인 국선변호사가 초동 수사를 담

55)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3. 9. 30, 보도자료 참조.

당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나 전국 25개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법률조력인인 국선변호사를 지정 신청하기 때문이며, 또한 경찰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절차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률조력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찰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 법률조력인인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에서 검사가 순서대로 선정하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예컨대, 여자 변호사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선변호사를 지정하고 있다.

## 라. 경찰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현황

위의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8월까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율이 92.8%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검찰청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상담원 등에게 법률조력인인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현재 경찰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상담치료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성매매사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수사·의료·상담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sup>56)</sup>

또한 병원진료 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진술과 조서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이나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조력인을 배치하여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형사 소송 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에 25개의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sup>57)</sup> 2017년까지 연차별로 추가하여 총

56) 서울대학병원의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사건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데, 2013년 한해 동안 1,184건의 범죄피해 접수가 있었는데, 성폭력 범죄가 전체 84%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11%), 성매매(1%), 기타 학교폭력(4%)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주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실 보도자료 참조.

57) 원스톱지원센터는 일본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수제도로 보도되고 있으며, 미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9】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현황(25개소)

구분	위탁기관	소재지	비고
서울	경찰병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	
	서울대병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길 39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부산의료원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중리동 1162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 동구 송림 4동 318-1	
	인천성모병원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광주	조선대병원	광주 동구 서석동 588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울산	울산병원	울산 중구 태화동 123-3	
경기	아주대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안산한도병원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33	
강원	강릉도인병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065-2	
	강원대병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7-1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충남	단국대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359	
전북	전북대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전남	목포중앙병원	전남 목포시 석현동 815-5	
	성가롤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42	
경북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북문동 470	
	포항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 마산시 중앙동 3가 3	
제주	한라병원	제주시 연동 1963-2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2014. 6.

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할 만큼 여성·아동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3. 10.

## 제3장 경찰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은 경찰 수사 단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단계, 법원의 공판 단계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공판단계에서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인 출석권, 구속적 피의자 심문절차,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내 좌석, 출석, 기일지정 및 변경의 허가 신청, 의견진술권, 이의 제기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학자 및 관련 실무가들에 의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58)</sup>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경찰과 함께 전국의 25개 원스톱지원센터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상담사 등 피해자들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국선변호인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연구된 것이 미비하며, 이곳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

58) 이선경·이정훈·손정혜, “성폭력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9. 9일자 심포지엄 발제문; 김삼화 외 8인,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법무부, 2013; 이호중, “피해자 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9; 정현미,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 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김재희, “범죄피해자 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광대경·곽영길,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관한 보호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호, 2006; 원혜옥,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진술권”, 저스티스 제115호, 2010;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장필화 외,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에 관한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등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있다.

여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들과 직접 상대하는 경찰관들을 심층 면접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다.

## 제1절 경찰 수사 단계상 문제

### 1. 경찰 조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불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면접에 의하면, 경찰관서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 진담 경찰관들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고 대부분의 피해자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한다. 즉, 경찰의 피해자 조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시 국선변호사가 참석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조력인이 조사현장에 오고 있는지, 아니면 올 수 없는지 그 여부라도 알고 싶어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 조사가 끝난 후에도 전화 한통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한다.

또한 국선변호인중에는 얼굴 인사만 하고 곧바로 퇴장하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조사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범죄 입증 관련 증거 내용에 대하여 소통이 필요하리라 여겨지지만 어떤 정보교환도 없이 돌아가는 국선변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이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선변호인들이 성의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에서 비용만 받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경찰의 진술조사시 참석만 한 경우로 본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전담 경찰관들은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듣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들이 수사 경찰관들과의 성폭력 범죄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조금 더 협력을 한다면 그 범죄에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보통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진술 오염의 우려가 크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많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 참여와 함께 최초 진술의 중요성은 당연히 크다고 할 수 있다.<sup>59)</sup>

그러나 현재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찰 조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참석을 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참여와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초기 진술 이후에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자질 검증 및 부정처사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들은 대부분 원스톱지원센터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인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라포(rapport: 마음의 유대, 즉 상호신뢰관계)<sup>60)</sup>를 형성하여 피해자들과 상담을 통해 정신적·심리적 등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59) 김정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1주년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 심포지움 자료집, 2013. 3. 15, 42쪽.

60) 라포(Rapport)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마음의 유대’란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라포가 형성되면 호감·신뢰심이 생기고 비로소 깊은 마음속의 사연까지 언어화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과 의견개진, 피해회복 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지적 장애인 즉, 뇌질환 관련 장애인으로 언어장애를 수반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힘들어 경찰관, 상담사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사들도 아동과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들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중에는 지정 건수에만 집착을 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만을 강요하거나 윈스톱 지원센터에서의 진술녹화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속기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사본만을 요청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적 조력 이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선변호사들의 자질을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각 지방 검찰청의 명부에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자질을 검증한 결과와 평가를 반영 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이 되어 피해자를 위해 여러 형태로 법률적 조력을 주고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도 헤아리게 된 국선변호사들은 차후 또 다른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로 선임이 되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있던 경험을 살려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인 윤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무료로 법률적 조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피고인을 위한 변호업무를 자제할 수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는 국가가 변호 업무에 관한 보수를 주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국선변호 활동을 이용한 경험을 성폭력 가해자 변호에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최소 2-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경찰, 상담사 등 관련자들이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 한 후, 변호인을 대상으로 피해자 평가 등을 이용하여 국선변호인의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평가 후 부적격 국선변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3.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반복 진술

경찰의 피해자 진술 조사시 최초의 진술녹화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 피해자와 상담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또 다시 범죄 피해 상황을 재현하는 면담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진술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 진술을 해야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반복적인 진술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이지만,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사, 진술전문가, 진술조력인 등에게 반복하여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여러 관계인들로부터 반복적인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 지원보다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공소제기 단계에서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러 관계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상 문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인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경우, 경찰은 국선 변호사의 역할, 권리,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 특정 변호인의 지정 신청 및 국선변호사의 변경 신청권 등 피해자들의 권한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장애인·여성 등인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청을 원하고 있으며, 여성변호사들도 신청할 수 있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한 지정 신청시 검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명부를 피해자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상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심각한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들의 취약성과 특성을 잘 파악하여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피해자 국선 변호인 명부의 순번에 의해 국선변호사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본인의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라 하여도 그에게 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법률 조력인이 젊은 국선 변호사의 경우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로 보기보다는 국선변호사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본인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성폭력 범죄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장애인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명부를 통한 국선변호사 지정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제도적 문제

### 1. 경찰 실무상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의 복잡성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법률이 많고, 이 법률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수시로 강력한 처벌 위주로 개정이 되고 있다. 실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주요 제·개정 내용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 2013. 6. 19. 성범죄 관련 개정된 법률만 보더라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관련 및 유사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지만, 실제 위 법률들의 개정된 법률 내용도 경찰관, 판사, 검사, 법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구체적인 개

정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조차도 전담 국선변호사가 아니라면 성폭력 관련 법률들을 따로 찾아 제·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할 정도이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법률의 복잡한 문제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사건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의 형사 절차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운영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률조력인인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진술분석 전문가 등에 대한 역할 교육과 관련 법률 규정도 일률적일 필요가 있다.

## 2. 수사 단계에서의 다른 지원자들과 일정 불일치

성폭력 범죄 사건이 접수가 된 경우, 원스톱지원센터의 수사관들은 우선 범죄 피해자를 면담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전문가, 신뢰관계인, 속기사 등 각 지원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관할 지방 검찰청에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며 담당검사로부터 지휘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는 잠시의 기다림도 힘들어하며 곧바로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를 해주길 요청한다.

특히, 19세미만 청소년과 아동·장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전문가, 속기사, 신뢰관계인 등 각기 다른 지원자들과 일정이 모두 맞아야하고 또한 상주하지 않은 지원 조력자에 대하여는 이들이 원스톱지원센터에 도착하길 기다려줘야 하는 등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모두

의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sup>61)</sup>

이때 피해자에게 추후 재방문하여 진술 조사를 권유하면 몹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한다. 예를 들면,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이고, 다른 지원자들과의 일정 불일치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대다수는 재방문하여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19세미만 청소년과 장애인 피해자를 둘러싼 신뢰관계자, 진술전문가, 속기사, 법률조력인, 여성장애인 및 아동센터 등의 지원단체 등과 연계, 그리고 피해 조사를 준비하는 경찰관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최초의 진술조사 과정에 참석해주길 기다리며 전화수화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은데 지금까지 스스로 전화하여 ‘언제 조사를 하느냐’며 문의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거의 없다. 대부분 피해자 국선변호인 참석을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가 ‘사건을 안하겠다. 집에 가겠다’고 하면 경찰관이 국선변호인에게 전화하여 진술조사에 참여가능한지, 혹시 불가하다면 피해자와 통화만이라도 해달라 부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오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는 몹시 난색을 표한다. 그렇다면 꼭 피해당일에 피해자 조사를 마쳐야 하는가?<sup>62)</sup>

대부분의 피해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두 번이상 원스톱센터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내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도 없고 조사 시간을 미룰 수록 사건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기에 빨리 조사를 마치고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즉시 조사요청을 하게된다. 초기 사건 접수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안정, 의료지원, 피해자 조사, 법률지원, 그 외 건들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연락없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전화를 기다리며 있을 수는 없는 복잡하고 힘든

61) 박옥숙, “법률조력인과 함께 한 1년”, 법무부, 2013, 79-80쪽.

62) 박옥숙, 위의 글, 79-80쪽.

현장 상황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sup>63)</sup>

### 3. 경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경찰의 수사절차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협조 부분에서는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형사절차에 관한 통지나 통보 즉, 조사일시, 송치일자, 피해자를 위한 필요한 지원 요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마다 차이가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의 유대 관계가 형성된 다수의 국선변호사들은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적극성을 보이지만, 간혹 ‘지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국선 변호사가 전화 상담만 요청한다’는 등의 피해자들의 불만 의견도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는 무료이고, 이들의 법률조력 활동에 대한 보수는 각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론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고 권하는 사례 등 법률적인 무지와 소통의 결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들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수사 진행절차의 미통보,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미고지 등의 사례와 심지어 사건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불만 여론도 있다고 한다.

63) 박옥숙, 위의 글, 79-80쪽.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성폭력 전담 경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 4.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 문제

보통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이들의 진술을 돕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도입된 ‘진술조력인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예산, 시스템, 조력인의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인 경우는 법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진술분석 전문가의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진술조력인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그 역할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sup>64)</sup>

성폭력 범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아동·장애인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특성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기억은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아기에 기억왜곡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기억 인출과정에서 유도질문과 같이 잘못된 조사방법으로 인해 기억 왜곡이 유발되어 실제 경험과 상상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저장, 기억, 회상하여 언어적으로 보고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

또한 아동의 지적 발달정도에 따라 질문의 이해, 기억한 내용의 표현이 언어능력에 따라 대답이 곤란할 수 있다. 흔히, 피해 아동의 진술이

64) 최지숙,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서울신문, 2014. 2. 26일자.

일관되지 못하고, 말을 바꾸거나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린 아동일수록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진술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진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증언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sup>65)</sup>

이러한 경우 범죄 피해자의 진술확보를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아동, 장애인 등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력 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에 주력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sup>66)</sup> 이는 과거

65)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압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 61027 판결(공2006하, 198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공2004상, 579);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공2008상, 264).

66) 영국에서 진술조력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중개자(intermediary)는, 조사와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조사 및 신문 전에 담당 경찰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필요한 사항을 논의, 조정한다. 조사 전에는, 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방법, 질문 형식이나 질문 방식에서 고려할 점, 조사실 준비 관련 사항, 의사소통 보조도구의 사용법, 휴식시간과 간격, 증인의 이해 및 건강상 필요 관련 사항 등을 경찰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 신문 전에 판사,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등과 함께 증인에게 적

진술분석 전문가들을 진술조력인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진술분석과 유사한 피해자의 진술능력평가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sup>67)</sup>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의사소통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황 정도의 진술이라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여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sup>68)</sup>

따라서 진술조력인에 대한 활동 범위의 명확성, 아동과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교육 등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합한 질문 방법, 증개자의 참여 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사·재판기관과 변호사는 소통상의 문제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정혜,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공익인권재단 공감, 2013. 7. 16 참고.

67) 그 이유는 2014년 1월 법무부는 48명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였는데, 48명의 진술조력인들 중 상당수는 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하던 이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최지숙,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서울신문, 2014. 2. 26일자.

68) 이 부분은 경찰의 연구모임인 성폭력 수사연구회에서 연구 자료를 참고 하였다. 박영경,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 제도 방안”, 부산경찰청 성폭력수사연구회, 15-16쪽 참고.

## 제4장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 제1절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

#### 1. 야간·휴일 등 국선변호사 조력 시스템 마련 필요

성폭력 범죄는 주간·야간·심야·휴일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및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주간·야간·심야·휴일 등 상시 원스톱지원센터나 수사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시 이들 범죄자의 신병처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진술만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최초의 진술에 있어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된다.

또한 가출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심야나 저녁 늦은 시간에 성폭행을 당하여 원스톱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sup>69)</sup> 이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실제로 심야·야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귀가 조치한 후 다음날 진술을 받는 경우가

69) 2006. 3 - 2011. 12. 인천원스톱지원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4,355명중 센터 방문 시간대 별 현황에 의하면, 총4,355명중 2,624명(60%)이 야간에 내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989명으로 23%를 차지하였고,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1,635명으로 37%를 차지하여 성폭력 범죄의 대부분은 주로 심야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옥숙, 앞의 글, 86쪽.

있지만,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귀가 후 진술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원스톱지원센터를 찾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50% 정도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결국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없이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자가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듯 긴박하고 취약한 시간대에 국선변호사의 지원없이 최초의 진술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주간, 야간, 심야, 휴일을 불문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들의 인력활용 시스템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근으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운영된다면,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13. 7. 4.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을 추진하였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sup>70)</sup>에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전담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상당수의 국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71)</sup>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가 즉, 법무부에서 직접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sup>72)</sup> 외에 법률구조공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70) 전국 5개소 통합 지원센터는 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 이다.

71) 강동욱, 앞의 논문, 94쪽.

72) 법무부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 전

가능하겠지만 이외에 피해자의 특성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sup>73)</sup>

또한 현재 경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20명 채용을 하였는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야간 또는 휴일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면, 휴일, 야간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법률적 조력을 주기가 취약한 시간대에는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만 하다 할 것이다.

## 2. 장애인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특화 필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정에 있어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심각한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의 피해자 보호지원과 담당자가 국선변호사 인력풀에 따라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 있다.

장애에는 여러 형태의 종류가 있고, 이로 인한 소통상의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각기 현행 법률에서 장애를 유형화하는 방

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선발하여 교육한 후 원스톱지원센터에 단계적 배치하고 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따른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2~2016), 2012, 18쪽 참조. 현재 법무부 소속 5명은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에 2명, 수원과 대구 각각 1명씩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73)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310쪽; 강동욱, 앞의 논문, 94쪽;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2, 229쪽.

법도 다르다.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언어 이해나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청각장애, 음성기능 상의 장애 등으로 듣지 못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sup>74)</sup> 지적능력은 낮지 않으나 뇌성마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음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장애와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원인이 소통상의 어려움으로 본인의 의사표현과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sup>75)</sup>

이처럼 장애인의 특성상 소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 이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지적장애인은 수사기관 및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피해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진술이 어렵고, 피해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의심되는 행동 등 이러한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신청된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는 진술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변호인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없이 강간 사건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단정하거나, 피해자의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를 취조하듯이 따져 묻는 경우 등이다.

또한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본 경험이 풍부한 보조인이 진술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자와 수사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11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p>76)</sup>에 따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

74) 형사소송법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5) 이를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범죄수사규칙」의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몇몇 규칙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보조인’ 또는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12618호로 2014. 5. 20. 제정되어

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로써 수사기관이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를 갖은 사람들은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사 기법도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의 경우 언어장애를 동반한 복합장애의 경우는 행동묘사로 피해를 표현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라든지, 자폐아동의 경우에는 자폐의 특성에 따라 그림을 좋아하면 피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사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아동상담 기법인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이 가미된 조사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77)</sup> 그리고 피해자의 장애를 감안하여 경찰단계의 진술 초기부터 장애 피해자의 이해와 소통방법에 부합하는 조사와 신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적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용어나 단어, 유행어 등을 자제하고, 질문은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로 피해자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전담으로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물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더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만큼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들

2015. 11. 21 시행될 예정이다.

77) 박영경,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제도 방안”, 부산경찰청청 성폭력수사연구회, 16쪽 참고.

이 그들만의 노하우가 축적되거나 개인적인 관심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등의 특성을 연구하여 조금씩 전문화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인여성 등의 피해자보다도 장애인은 더욱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sup>78)</sup> 더불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장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국선변호사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 3.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최초 진술부터 참여

법률조력인으로 시작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이 된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다. 경찰의 경우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시작되는 최초의 진술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배석 없이 최초의 진술조서를 받는 것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원스톱지원센터 심층 면접에서도 발견되었으며, 경찰이 조속한 수사를 위해서 최초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신청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와 아직도 경찰관들 중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찰관도 있다고 하였다.

78) 조주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10. 14, 4쪽.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최초 진술 전에 국선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첫 진술에 변호사가 동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2차 피해 중 하나인 진술 횟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부터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이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정 및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 및 안내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취지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본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최초의 진술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택권 제공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에게 피해가 접수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피해자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달리 심리적인 안정도 매우 중요하고, 사적인 비밀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자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범죄사건발생 후 피해자가 관련 상담기관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서 몇 번

접촉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규칙(제10조 제2항)」에서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79)</sup>

그러나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즉, 국선변호사의 성별, 활동하는 연계기관, 지원활동 및 관련사건 지원 경험 유무 등이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지정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선정을 요청하게 되므로 사실상 자신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sup>80)</sup>

그러므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택권이 사실상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검찰청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등록된 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의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특기사항으로서 관련 교육 이수 여부, 관련 활동 기관 및 활동 경력, 관련 연구 경력, 관련사건 지원 경험 유무 등 예정자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예정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로 지정한 피해자의 특성 분류, 예정자의 성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sup>81)</sup>

79) 강동욱, 앞의 논문, 90쪽.

80) 강동욱, 앞의 논문, 90쪽; 김정혜, 앞의 논문, 33쪽 참조.

81) 김정혜, 앞의 논문, 56~57쪽.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등에게 국선변호사제도의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에 성폭력사건의 지원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일선검찰청의 예정자 명부 중에서 관련 경력을 검토하여 국선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백미순, 앞의 논문, 19쪽; 강동

이와 같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지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과 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sup>82)</sup>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조력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나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청한 변호사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83)</sup>

또 국가에 의해 이미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국선변호사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가 추천하는 자를 국선변호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sup>84)</sup>

## 제2절 법 ·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1. 경찰과 검찰의 협력 구축을 통한 반복진술의 최소화

육, 앞의 논문, 91쪽.

82) 백미순, 앞의 논문, 19쪽. 법률조력인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편에서 법률조력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42.6%만 만족한다고 하였다. 백미순, 앞의 논문, 20쪽; 강동욱, 앞의 논문, 91쪽.

83)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피해자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전에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 검찰청의 피해자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검찰청에서 지정을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김정혜, 앞의 논문, 41쪽; 강동욱, 앞의 논문, 91쪽.

84)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정과 사건에 적합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하고, 가급적이면 이미 윈스톱 센터 등을 통해 조력을 받던 변호사가 있으면 그 연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동욱, 앞의 논문, 91쪽; 권순민,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형사법의신동향 제41호, 대검찰청, 2013.12, 197쪽.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조서 단계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협력과 관련한 이선정 변호사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sup>85)</sup>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두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동 성폭력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아동의 최초 진술에 경찰과 검찰,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sup>86)</sup>

현재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성폭력 범죄 발생이나 범죄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시 경찰, 심리전문가,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이 모두 참여하여 1회의 진술로 마무리 할 수 있는 합동 조사시스템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sup>87)</sup> 성폭력 전담 검사가 조사단계에서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2014년 5월 26일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간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 시스템’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화상협력시스템의 운영방식은 전담검사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지켜보며 필요시 전담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다. 이 화상

85) 이선정, 앞의 논문, 24쪽.

86)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 권고”, 2010. 8. 2.

87) 미국에서의 경우,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아동심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동조사를 하게 되며, 이때 참여한 전문가가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 이후 아동 행동 변화에 대한 분석(CSBI, Child Sexual Behavior Inventory: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적인 경계, 성역할 행동, 성적인 노출증, 성적 관심, 성적인 공격행위, 불안 등의 영역을 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후 전문가가 최종 작성한 분석결과서가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아동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게 된다. 이 CSBI는 1986년 美 플로리다에서 개발되어 현재 대부분의 州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 이운주,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검토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법무부 인권정책과, 2011. 5. 4, 79쪽.

협력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진술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 및 2차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화상협력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sup>88)</sup>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반복된 진술 조사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상협력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진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진술, 2차 피해를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89)</sup>

이러한 화상협력 시스템 뿐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있어서도 경찰과 검찰 양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라는 실효적 측면에서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2.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의 남용 방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일률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지정하다 보니, ‘사건화 되지 않은 사건’, ‘아주 경미한 사건’ 까지도 범죄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지정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있다.

88)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 진술 최소화를 위한 협업 프로젝트 실시」, 2014. 5. 26. 보도자료 참조.

89)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범 실시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거부로 화상협력 시스템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피해사실을 최소한의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싶은 피해자나 보호자들의 심리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사실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각 하된 사건,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불기소로 종결하는 사건도 많은데, 현재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가 신청하고 지정만 하면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중(輕重)에 따라 정말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은 상대적으로 강간이나 특수강간 등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고, 피해정도도 아주 사소하고 경미하여 현장에서 발각되어 가해자와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사례까지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신청되고, 지정되어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남용이라 생각된다. 또한 법률 전문가인 국선변호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 피해자에 비해 사건의 경중(輕重)과 상관없이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면, 중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조언을 행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국가가 지불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의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법률적 조력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청과 지정은 범죄 사건의 경중(輕重)을 구별하고, 법률조력인인 국선변호사의 변호가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의 신청을 제한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의 남용 문제와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3. 강력범죄 피해자로의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장기적으로는 살인, 강도, 상해 등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 중 살인, 흉기를 이용한 상해 등 특정강력범죄<sup>90)</sup> 피해자를 위해서는 더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중 고의범에 의한 범죄 행위,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 및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 제도가 있다. 이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sup>91)</sup>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9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1990년 제정된 뒤 1993년 12월 법률 제4590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특정강력범죄'란 ① 살인죄 가운데 살인·준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② 약취유인죄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와 그 상습범·미수범, ③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④ 강도·특수강도·준강도·약취강도·강도상해 및 치사·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91)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제30조)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신설하고,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1987년 11월에 제정하여 1988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를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의 미흡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5월 14일 두 법률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통합하여

사람이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신청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 피해로 인한 신청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급한 구조금은 예산상의 이유로 항상 부족하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292억원을 지급했고, 지급 건수는 1,745여건 이었다.<sup>92)</sup>

앞서 설명하였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의 남용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아주 사소하고 미약하고 경미한 다시 말해,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 없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제한하고, 대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 중에서 생명과 신체를 해하여 사망이나 장애,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2014년 9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도 심도 있게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sup>93)</sup>

---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을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 제도로 미국은 폭력범죄, 음주운전, 가정내 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것으로 심리적 카운슬링을 포함한 의료비, 범죄에 의한 신체적 상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 살인의 경우 장례비용 및 생활비 등이 보상의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은 2001년 범죄피해보업무를 담당할 행정기구로 ‘범죄피해보상청(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을 설치하였고, 2004년 ‘잉글랜드-웨일즈 피해자 기금(Victim’s Fund in England and Wales)’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상은 위로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011, 25-27쪽 참조.

9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9)(통계청 자료 참고) 2014. 6. 30 방문.

93) 독일은 피해자변호인 제도를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여 모든 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이익을

#### 4. 외국인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정 확대

2013년 6월 기준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의 수는 총 637명이며,<sup>94)</sup> 국선 전담변호사의 경우는 11명에 지나지 않고, 이외에 일반 변호사가 517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69명, 공익법무관이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2013년 한해 동안 지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운영된 현황은 전국적으로 총 8,812명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8,804명(91.7%)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월 평균 673.7명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5)</sup>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접수 대비 지정율이 매우 높다.<sup>96)</sup> 특히 201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의 수는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의 f). 또한 피해자권리개력법이 2004년 6월 24일 개정된 이후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연방변호사법, 형법, 소년법원법, 변호사수임료법 등 총 7개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200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독일의 피해자변호인제도는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제68조b에 규정된 증인(Zeugen)에 대한 변호인제도이고, 둘째는 제397조a와 제406조g에 규정된 부대소송참가자(Nebenklage)에 대한 변호인제도이고, 셋째는 제406조f에 규정된 범죄피해자(Verletzte)에 대한 변호인제도이다. BT Drucks 16/12098, S. 1 ff; 원혜옥,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법무부 인권정책과, 2011. 5. 4, 37-38쪽 재인용.

94)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북부지검·서부지검 243명, 의정부지검·고양지청 18명, 인천지검·부천지청 16명, 수원지검·성남지청·안양안산평택여주지청 51명, 춘천지검·원주지청·속초지청·강릉지청·영월지청 29명, 대전지검·천안지청·공주지청·논산지청·홍성지청·서산지청 42명, 청주지검·충주지청·영동지청·제천지청 25명, 대구지검·서부지청·안동지청·포항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의성지청·영덕지청·경주지청 43명, 부산지검·동부지청 37명, 울산지검 21명, 창원지검·마산지청·진주지청·거창지청·통영지청·밀양지청 34명, 광주지검·목포지청·순천지청·장흥지청·해남지청 44명, 전주지검·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 24명, 제주지검 10명 총637명.

95) 강동욱, 앞의 논문, 80쪽.

중전의 법률조력인 제도를 운영해 온 2012년의 2,908명 보다 약 2.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sup>97)</sup>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이용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8)</sup>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전담 변호사의 경우는 실제 매우 적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157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인구 100명 중 3명 정도가 외국인이다.<sup>99)</sup>

### 【표 10】 최근 10년간 외국인 체류 인원 현황

(단위 : 명)

96) 구체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검이 88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중앙지검이 796명, 광주지검이 500명, 부산지검이 436명, 대구지검본청이 3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동지청과 해남지청이 5명이며, 장흥지청이 6명, 충주지청이 8명, 제천지청과 영덕지청이 9명 등의 순으로 이용수가 낮게 나타났다. 2013. 1. 1 - 12. 15 기준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국청 운영 누적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동욱, 앞의 논문, 81-82쪽 참조.

97)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박사는 이에 대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 19세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2년 수치는 1년간 이용건수가 아니라 8개월간의 이용건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월평균 피해자국선변호사 이용건수를 집계해보면, 2012년 363.5건, 2013년 673.6건으로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3년 6월부터는 이용대상이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되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가 전체 성폭력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성인대상 성폭력범죄건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건수의 약 8배 정도 높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이용건수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김지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2014. 3, 102쪽.

98) 법률조력인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백미순, 앞의 논문, 12-13쪽 참조.

99)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기준 157만6034명으로 2012년 144만5103명 보다 9%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1일 이상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121만9192명이다.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인원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68,866	1,168,477	1,261,415	1,335,077	1,445,103	1,576,034
증감률	-	0.5% ↓	21.8% ↑	17.2% ↑	8.7% ↑	0.8% ↑	8.0% ↑	10.6% ↑	3.6% ↑	9.0% ↑

※ 출처: 법무부

이처럼 외국인 체류인원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외국인 범죄가 6,144건에서 2012년 2만4379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성폭력 범죄는 7.2배가 증가하였다.<sup>100)</sup>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 여성의 인적 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 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해야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에서처럼 국선 전담변호사 인원이 소수이면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한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경찰병원의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월 평균 3-4건은 외국인 피해자

100) 조기중, 「외국인 범죄 '급증', 10년간 4배 늘고, 성범죄는 7배 늘어」, 아시아 뉴스, 2013. 10. 10일자 참조.

(중국인, 일본인, 유럽 등)가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우선 외국인을 위한 전담 국선변호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특화시킬 때 외국어 전담 국선변호사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전문으로 전담할 수 있는 국선 변호인 확충과 더불어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 5. 국선변호인 제도의 홍보를 통한 피해자 보호 정착

2013년 한해 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실적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 수에 있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발생 빈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률구조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에서 더 많은 이용되고 있다.<sup>101)</sup>

2013년 6월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13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피해자 등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어야 하는 일부 대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국선변호사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어,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 대상자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선변호사에게

101) 강동욱, 앞의 논문, 83쪽.

선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 국선변호사 신청에 있어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즉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외적인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2년 성폭력 범죄 접수건수는 24,790건(인구 10만명당 42.7건)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용건수는 총 8,084건으로 성폭력 범죄 접수건수의 32.6%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약 3명만이 국선변호사를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10명 당 약 7명은 어떤 이유인지 불명확하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이용자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sup>102)</sup>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와 더불어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 지원에 대해 피해자에게 자세하게 고지할 의무를 강화하고,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도움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고지 이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과 정부의 홍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6.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아동성폭력 전문성 구축

102) 김지선, 앞의 논문, 102쪽.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에 있어 피해자 지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아동·청소년·지적장애인 등 피해자 유형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 등 취약계층 당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나이별, 연령별, 장애별 개인적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sup>103)</sup>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률 지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그 개인별 특성을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그에 대한 사전 연구와 사례 습득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법적 지식 등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장애인은 성인에 비하여 기억능력이나 언어능력, 표현능력이 미숙하여 발달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기법을 아동·장애인을 조사하거나 신문하고, 아동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술조사 방식을 개발하는 등<sup>104)</sup> 전문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105)</sup>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는 그 피해 유형이나 정도 뿐 아니라 아동의

103)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 피해자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사례, 국선변호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면담을 진행하여 화간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의 후유증이 가중된 사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충 및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이 나타난다. 백미순, 앞의 논문, 58-59쪽.

10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술조사기법(NICHD)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진술조사 기법 프로토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은 아동과 달리 사회경험, 부정적 자아개념, 고립과 반복된 거부 경험이 있어 성폭력 범죄에서 요구하는 강제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장애인에게 반항 불능케 할 요소들은 많이 있어 신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사전면담, 소속 사회집단의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요구된다. 박영경,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 제도 방안”, 부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연구회, 22쪽

105) 원혜옥,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의 인정여부」, 피해자학연구 제 15권 제2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248쪽; 박영경, 앞의 논문, 16쪽 참고.

발달 수준, 정서적 상태,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어 지원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까지의 많은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주는 명확한 의료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 가해자 자백 혹은 물리적 증거가 부재하거나 결정적이지 않다.<sup>106)</sup>

따라서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sup>107)</sup>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만이 제대로 조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라고 해서 이러한 전문지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6) 김태경·이영호, “아동 진술조사 지침서 - 성폭력 피해 아동과의 조사적 면담을 중심으로”, 두감람나무, 2010. 1. 4; 이미경,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과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 확대-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2011. 5. 4, 56쪽.

107) 「어린이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현장」에 나와 있는 「수사/공판과정에서의 권리」로, 1. 내가 어리다고 나의 말을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1.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1. 내가 왜 모르는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어른들인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주세요. 1. 나에게 그 때 왜 도망치거나 소리치거나 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고 묻지 마세요. 그 일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1. 나의 이름이나 얼굴, 학교 등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아주세요. 1. 나를 또 다른 위협과 폭력 속에 놓아두지 마세요. 나는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1.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앞에 혼자 가서, 기억하기 싫은 일을 말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야기해야할 때 무섭지 않은 곳에 아는 어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1.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질문해주세요. 1.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주세요. 1. 무조건 예, 아니오 둘 중 하나로 답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너무 많아요. 1. 그 일과 관련된 것 말고, 나에 대한 다른 것들을 자꾸 물어오는 것은 싫어요. 1. 그 일을 자꾸 기억하고 말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어요. 한번만 말하게 해주세요. 1. 나의 이야기도 어른들 말처럼 중요한 말로 인정해주세요. 어리지만 나도 나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말할 줄 알아요. 1.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싫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1. 다른 어른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해주세요. 1.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1.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내가 일러서 벌 받았다고 나한테 쫓아올까 봐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린이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현장」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제정하여, 동 협의회 주최 「어린이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2004)」에서 발표한 것으로 성폭력 국선변호인이라면 한번쯤 깊이 새겨봐야 할 내용이다. 이미경, 「앞의 글」, 63-64쪽.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sup>108)</sup>

그러나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운용 실무를 보면, 각 검찰청별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간담회, 피해자국선변호사들 자체적인 소모임 등을 진행하여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은 진행되고 있으나, 전 국가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전문성 교육이나 네트워킹 형성 진행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법령에는 연 1회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연 1회의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전문 지식의 간극을 보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sup>109)</sup>

따라서 정부는 아동 등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분야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선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108) 이미경, 앞의 글, 57쪽.

109) 손정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실무 경험 시각에서 본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방안”, 법무부, 2014. 3, 116쪽.

## 제5장 결 론

2012년 초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홍보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이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였다. 즉,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2위이고,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에 그치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의 2% 정도의 극소수만이 실제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조력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즉,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함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특히 다른 범죄보다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사법절차상 고통스러운 수사절차나 재판 과정에 따라 아동·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심리적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다. 특히, 범죄심리학에선 성폭력·아동학대를 ‘영혼살인(Soul Murder)’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장기간 성폭력, 학대 받은 아동의 뇌를 촬영했더니, 하나같이 사고와 감정 조절을 관장하는 대뇌 전두엽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다. 이처럼 ‘영혼살인’은 육체는 살

아 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9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없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가입국들의 적극적인 아동보호 노력을 촉구했을 정도이다.<sup>110)</sup>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형사사법 절차가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심이 되었다면, 이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오랫동안 소외되고 외면 받았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청소년·여성 등은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 법률적 조력인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재 법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시행 된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다. 특히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및 보호자를 상대로 연락과 상담, 역할 설명, 형사절차 안내, 의견진술, 증거제출,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조사시 동석·참관, 검찰의 송치 여부 확인 후 연락, 수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연락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법률조력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본문의 내용처럼 야간, 휴일을 불문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장애인이나 외국인처럼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의 지속적인 자질 검증, 부정처사시 국선변호인 자격 박탈, 경찰관·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 아직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110) 표창원, “SOS! 대한민국 어린이로 살아가기”, 주간동아, 2009. 11. 11 참조.

대한 많은 허점들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들이 경찰 수사 단계인 초기 진술부터 국선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여 이들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또한 피해자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들이 정착되어 간다면, 이를 초석으로 삼아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를 비롯한 다른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확대·적용될 것이다. 당장 2014. 9. 29.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sup>111)</sup>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강도, 상해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분야의 법적 지원 뿐 아니라 항상 형사사건과 수반되는 민사·가사 분야에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범죄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 받

1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 1. 28. 제정, 9. 29. 시행될 것이다. 본 법률을 통해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에 사법기관이 적극 개입하면서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사법적 개입 가능해졌다. 즉,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상향(300만원→500만원)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학대 피해 현장 출동 후 응급조치와 긴급입시조치 등을 통해 신속한 사법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격리, 친권 제한·정지 등 실효성을 확보 했다. 즉,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격리, 친권 제한·정지 등 입시조치를 신청하도록 강제하였다. 물론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동법의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치사(5년이상 무기), 아동학대중상해(3년 이상), 상습 아동학대(2분의1 가중) 내용에 따라 엄격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가사절차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법률상 권익을 보장하고 진술을 도와주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 I. 국내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권고」, 2010. 8. 2.
-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3. 10.
- \_\_\_\_\_,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경찰청, 2013. 6.
- \_\_\_\_\_, 「폭력 없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2012, '5대폭력 척결' 추진 백서)」, 경찰청, 2012. 12.
- \_\_\_\_\_,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100일」, 2013. 6.
- 강은영 외, 「국내외 아동성폭력 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2010.
-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 법무부 인권국, 2014. 3.
- \_\_\_\_\_,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관련 개정내용과 해설」, 경찰연구논집 제4호,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2009. 2.
- 곽대경·곽영길,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관한 보호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호, 2006.
- 권순민,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형사법의신동향 제41호, 대검찰청, 2013. 12.
- 국회입법조사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011.
- 김삼화 외 8인,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법무부, 2013.
-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

- 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 김정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1주년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 심포지움 자료집, 2013. 3. 15.
- 김삼화 외 8인,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 김지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법무부, 2014. 3.
- 김태경·이영호, 「아동 진술조사 지침서 - 성폭력 피해 아동과의 조사적 면담을 중심으로」, 두감람나무, 2010. 1. 4.
- 김학신,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2014.
- 김희정, 「아동성폭력 2차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재판, 언론보도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민모인 발자국, 2013. 8. 29
-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곁에는 국선변호사가...」, 대검 보도자료, 2013. 9. 30.
- \_\_\_\_\_,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3. 9. 30.
- 도중진·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8.
- 박영경,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 제도 방안」, 부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연구회.
- 박은정,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방안 토론문」, 법무부 인권정책과, 2011. 5. 4.
- 백미순 외3,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 박옥숙, 「법률조력인과 함께 한 1년」, 법무부, 2013.
- 박정성,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한양법학 제20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09. 8.
- 법무부, 「세계 최초 민·형사 통합 국가지원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2011. 7. 13, 보도자료.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 손정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실무 경험 시각에서 본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방안」, 법무부, 2014. 3.
- 송옥진, 「누명 쓴 언니 곁에 진술조력인 있었다면...경찰, 거짓 진술에 따른 불안감 파악 못해」, 한국일보, 2014. 4. 13 기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法文社, 2011.
- 양규원, 「성폭력 피해 ‘진술조력인제’ 수사·재판 현장 정착 못해」, 전자신문, 2014. 5. 2.
-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 아동과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2012. 3. 27 보도자료.
- 吳世敬,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2010.
- 원혜옥,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에 대한 토론문」, 법무부, 2013. 3.
- \_\_\_\_\_,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의 인정여부」,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원혜옥,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진술권」, 저스티스 제115호, 2010.

- 이미경,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과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 확대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법무부 인권정책과, 2011. 5. 4.
- 이선경·이정훈·손정혜, 「성폭력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호」 심포지엄 발제문,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9. 9.
- 이선경,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인권국, 2014. 3.
- 이애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그라지지 않는 ‘도가니’」, 함께걸음, 2014. 6. 12 일자.
- 이운주,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검토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법무부 인권정책과, 2011. 5. 4.
- 이호중, 「피해자 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9.
- 이희경, 「성폭력범죄 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이른바 4대악 관련 형사정책적 방향과 피해자학의 과제」, 한국피해자학회, 2013.
-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2.
- 장필화 외,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에 관한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 정현미,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 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조기중, 「외국인 범죄 ‘급증’, 10년간 4배 늘고, 성범죄는 7배 늘

- 어」, 아시아 뉴스, 2013. 10. 10일자.
- 조주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10. 14.
- 천정환,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정책의 문제점」, 교정복지연구 제23호, 2011.
- 최영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지정 토론」, 법무부, 2014. 3
- 표창원, 「SOS! 대한민국 어린이로 살아가기」, 주간동아, 2009. 11. 11.
- 홍종희, 「아동성폭력 2차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재판, 언론보도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2013. 8. 29.

## II. 외국 문헌

- Balloff, R., Glaubhaftigkeitsuntersuchung und diagnostischer Erkenntnisprozess in Fällen sexuellen Missbrauchs, 2002.
- Baumbach/Lauterbach/Albers/Hartmann, ZPo, 2010.

## III. 법원 판례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공2006하, 1983)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공2004상, 579)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공2008상, 264).
- 대전고등법원 2007.1.19. 2006노335.

책임연구보고서 2014-06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2015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